

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 2019 부산대표 창업기업 (플래티넘클럽) 모집공고

부산광역시와 (재)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 창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「2019 부산대표 창업기업(플래티넘클럽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5월 9일

(재)부산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: 부산대표 창업기업(플래티넘클럽) 발굴·육성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부산시 본사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
- 사업기간: 2019. 5. - 12.(8개월)
- 지원규모: 총 50개사 내외
- 사업목적: 부산 지역 내 초기투자를 유치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산대표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고, 지역 내 양질의 고용 확대 및 지역 창업 투자 활성화 도모
- 지원내용
 - 부산대표 창업기업 인증서 발급(인증기간: 2년)
 - 부산대표 창업기업(플래티넘클럽) 전용프로그램 운영(10개사 내외 선정, 사업화자금 지원)
 - 부산대표 창업기업 창업활동 및 육성 지원을 위한 멤버십제도 실시

2 지원개요

- 지원규모
 - 부산대표 창업기업(플래티넘클럽) 인증 및 공동 지원: 50개사 내외
 - 부산대표 창업기업 플래티넘클럽 전용프로그램 지원: 2019 플래티넘 클럽 회원사 중 10개사 내외 선정
- 세부지원내용
 - 부산시 본사 소재 7년미만 창업기업으로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성장가능성, 매출증대 및 투자실적,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부산대표 창업기업(플래티넘클럽) 50개사 내외로 선정 및 인증하고 그 중 우수기업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
 -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
 - *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2차년도 계속 지원 검토

① 부산대표 창업기업 플래티넘클럽 인증 및 공동지원

구분	지원내용
대표창업기업 인증	- 인증서 발급(인증 기간 2년) 및 수여식 개최(19.6.3) - 현판제작 및 회원사 인증카드 발급(인증 기간 2년)
네트워크지원	- 클럽데이를 통한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- 직군별 교류지원 등 네트워크 지원 - 스타트업 정책 제안, 제도개선, R&D개발 등 성장 과제 협력
홍보 지원	- 대표창업기업 공동기획홍보, 홍보동영상 등 제작 - 언론홍보 지원, 시내 버스정류장 LCD 홍보 지원
홈페이지 운영	- 대표창업기업 홈페이지 운영(기업인증, 제품 및 서비스 소개)
대표 창업 기업	- (서울보증보험)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(5억원 한도), 기업신용 관리 서비스 무상제공(회당 11만원 상당) - (신용보증기금) 보증료 최대 0.3% 차감우대 및 보증비율 우대(90~100%), 창업기업 특화컨설팅 및 기업연수 프로그램
공통 지원	- (부산은행) 대출금리 0.5% 우대, 법률자문서비스
기타복지	- 한화리조트(해운대) 이용료 할인(객실, 사우나, 조식) - 서울역 부울경비즈니스라운지(회의실) 이용 지원 - 부산시청 주차장 무료이용(추후 확대 예정) - 그린카 이용료 할인(최종 표출가격 추가 11% 할인) - 롯데엔제리너스(제조음료에 한해 잔 당 20%할인) - 호텔앤조이 할인(전용링크 최저가격 추가 5% 할인)
시제품제작	- 스마트스튜디오 및 시제품제작실 활용 지원
창업지원사업	-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추천서 발급 - 에이스텔라 육성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
AWS	- AWS 가이드북 제공, 수요조사를 통한 세미나 및 기술지원 - AWS Activate Portfolio Package 활용 및 AWS크레딧 지원

* 대표창업기업 멤버십 지원사항 변경 가능

② 부산대표 창업기업 플래티넘클럽 전용 프로그램 운영

- 지원방법: 부산대표 창업기업 플래티넘클럽 회원사 선정 후 플래티넘클럽 전용프로그램 지원기업 별도 평가
- 평가방법: 선정 평가 일정 향후 안내,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로 구성
- 지원규모: 50,000천원(10개사 내외)
 - * 선정기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
- 지원내용: 창업기업이 제출한 자금활용 계획서를 반영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세부 내용 협의 가능
- 지원사항(안)

<플래티넘클럽 전용 지원 프로그램>

구분	지원내용
플래티넘클럽 전용 지원	① R&D 개발지원 ·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성장형 R&D개발 지원 ※ 전용R&D, R&D기술개발, 시제품제작, 성능평가, 공정개선 등
	② 품질 및 시험인증 지원 · 개발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지원 ※ 신뢰성 시험, 국내외 시험인증 등
	③ 마케팅지원 · 개발제품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※ 브로셔, 홍보동영상, 홍보앱 제작 등 · 국·내외 전시회 참가 시 부스지원, 홍보물 제작, 소비자반응조사 · 홍보 동영상 제작, 온·오프라인 홍보, 홈페이지(모바일 포함) 제작 지원
	④ 글로벌 IR 참가 지원 ·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IR 참가지원 ※ IR 쇼케이스 세미나 및 피칭 등
	⑤ 세무·법무 지원 · 법무 수수료, 세무 수수료(세무 기장 대행 등), 회계 수수료 지원
	⑥ 컨설팅지원 · 기술 및 기업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 ※ 특허회피전략 수립, 기업성장전략, 전문가활용 등 · 특허 출원, 특허맵 분석 등

* 플래티넘클럽 전용지원사항 변경 가능

3 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'사업을 개시한 날'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- ① 창업기업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
- ② 사업 신청일 기준 투자자로부터 총 1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
 - 투자자는 특수 관계인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관투자에 한함
 - 투자 확약은 불인정하며,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
 -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지분투자형 (증권형)만 인정
- ③ 상시 종업원 수 포함 구성원 2인 이상인 창업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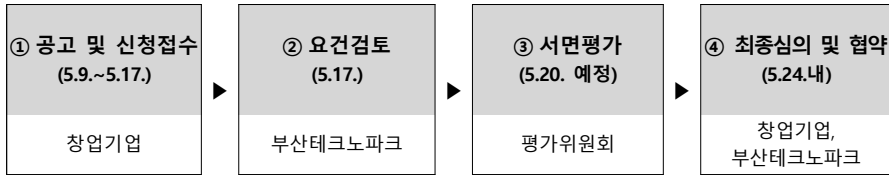
○ 지원제외대상

- ①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②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목적,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④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
 - (가)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제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(나)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, 대표,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
- ⑥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⑦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¹⁾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1)<참고> 창업제외 업종 참조
- ⑧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
- ⑨ 기타 부산광역시장의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4 선정절차

<부산대표 창업기업(플래티넘클럽) 신청 및 선정 절차>



- ① 신청 및 접수
- 제출기간: 2019년 5월 9일(목) ~ 5월 17일(금) 14:00 도착분에 한함
 - 제출방법: E-mail 제출
 - 제출양식: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btp.or.kr) - 사업공고
 - 제출처: ceb@btp.or.kr
 - 유의사항: 워드프로세서 자율, 제출파일명 형식 유지
 - 제출자료: 사업신청서*, 투자유치실적 증빙자료, 정보활용동의서, 법인사업자등록증,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
 - * 사업신청서 양식: [별첨] 서식 참조
 -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실무책임자의 E-mail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② 요건검토

-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 (의무사항, 채무불이행 등) 및 지원요건, 가점사항 인정여부 등을 검토
- 투자계약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등 정밀 실사 (가장납입,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의 내용과 다른 경우 미선정)

③ 서면평가

- 평가일정: 2019년 5월 20일(월) 예정
* 평가일정은 내부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평가방법: 5인 내외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서면평가,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를 통해 **사업내용 타당성, 후속성장계획 및 가능성, 매출 증대 및 투자실적, 성장전략 및 팀역량, 고용창출효과** 등을 종합 평가 합산 점수 70점 이상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

※ 종합평점 = 서면평가(100점) + 가점(최대 4점)*

- * 가점: ① 기업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기업(공동 대표인 경우 1인 이상)
 ② 전체 고용인력(직접 고용형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) 중 청년인력(만34세 이하)이 50% 이상(대표자 제외)인 기업
 ③ 2018년 부산대표창업기업 선정기업(2점)

④ 최종심의 및 협약체결

-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의 후 지원기업 확정
-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(2019년 5월 24일 이내)
- 창업기업-부산테크노파크간 협약체결

5 유의사항

- 선정자의 의무
 - 선정자는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해하여야 함
 - 창업기업은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(선정)을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환수
 - 선정자는 사업비 오·유용, 부정·불법집행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및 설명회에 연 2회 이상은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, 미참석 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정밀점검을 실시함
 - 선정자는 전담·관리기관의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약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분기별 신규 청년(만 39세 이하) 고용 사항을 확인, 최종 평가 시 반영하여 추후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반영
- 문의처
(재)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추은비 연구원
TEL: 051) 921-6001 / E-mail: ceb@btp.or.kr

<참고>

창업 제외업종 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관련)

법 제3조(적용범위)

1. 금융 및 보험업.

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.

(시행령 제4조 제1항)

법 제3조 제1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
1.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으로 할 것

2.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

2. 부동산업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
(시행령 제4조 제2항)

법 제3조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

1.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

2. 무도장운영업

3.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

4. 기타 잼블링 및 베틀업

5.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
6.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